

 금융감독원	보도자료	 보험개발원 <small>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</small>
--	-------------	--

보도	2025.12.16.(화) 조간	배포	2025.12.15.(월)	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	책임자 담당자	팀장 선임	변지영 홍윤태	(02-3145-7471) (02-3145-7472)
	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	책임자 담당자	실장 팀장	공진규 김영훈	(02-368-4094) (02-368-4302)

‘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’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**보험료 부담을 완화**하고, 이륜차 운전자의 **소비자 권익을 강화**하기 위하여,
-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‘**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 합리화**’를 추진합니다.
 - 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①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, ②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, ③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< 개선방안 주요 내용 >

구 분	세부 내용
①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	☞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~30% 인하하는 등 점진적인 합리화 추진
②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 가입대상 확대	☞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무보험 유행이 많은 청년 배달라이더(만21세 이상)도 시간제 보험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(기준 만24세 이상만 가능)
③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	☞ 이륜차 교체 후 新계약 체결 시,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(자동차보험과 동일)

- 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,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.

I . 추진 배경

- '25.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(배달용 오토바이 등)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.1만원 수준으로,
 -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*에 불구하고 배달 라이더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(종합보험 가입률 26.3%)
* 대인·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(19년),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(23년) 등
 - 또한,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, 과거 운전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,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민원 지속

< 이륜차보험 >

- (유형) 사용용도에 따라 출퇴근·레저 목적인 가정용 보험과 배달라이더(음식 배달 등)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등으로 구성
- (특징) '19년 코로나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의 성장으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('19년 1.1만명 → '25.6월 7.2만명)하였으나, 보험료(103.1만원)가 가정용(17.9만원) 대비 크게 높아 생계형 배달라이더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

II . 개선 내용

1

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

- (현황) 일부 보험사의 경우, 자사에 가입 중인 유상운송용 자기신체 사고 보험가입자 수가 충분치 못하여, 최적요율 산출에 어려움 발생
 - 이로 인해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비교 시,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높게 책정
- (개선방안) 각 보험사로 하여금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, 보험개발원의 전보보험사 통계를 활용하게 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* 유도
* 주요 보험사들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(약 28만원)의 인하(20~30%) 검토 중
- 다만, 보험개발원 보유 통계량도 다소 부족*한 측면이 있어, 각사 손해율 상황에 따른 점진적인 보험료 인하 추진
* 전보보험사의 이륜차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가입대수는 9천여대 수준에 불과

2

시간제보험 가입대상 확대(만 24세 이상 → 만 21세 이상)

□ (현황)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품으로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^{*}되었으나,

* '19.11월 최초 도입, '25.6월 기준 가입대수 18.6만대

-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, 적정한 위험도 평가 없이 청년(만21세 ~ 만24세 미만) 배달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을 제한

□ (개선방안)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(만21세 ~ 만24세 미만)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,

- 청년 배달라이더가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, 시간제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

3

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

□ (현황) 이륜차보험은 車보험과 달리 ①기존 계약 유지 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고, ②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에는 할인등급 승계 불가

< 기존 계약 할인등급 승계 여부 >

구 분	① 기존계약 유지時	② 신계약 체결時
자동차보험	인정(○)	○
이륜차보험	○	불인정(x)

민원 사례

□ 오토바이 무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가입했던 이륜차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 시,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*

* 연간 보험료 : (기존 보험) 13만원(할인등급 17Z) → (신규 보험) 35만원(기본등급 11Z)

□ (개선방안) 車보험과 동일하게,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新계약 체결 시,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*

* 가정용, 유상운송용 등 모든 이륜차보험에 동일하게 적용

- 다만, 계약자가 이륜차 다수 보유자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부터 3년이 미경과한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

※ 보험료 면탈목적의 이륜차 교체가 확인될 경우, 특별할증(50%) 제도를 신설·적용 (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)

III. 향후 계획

□ '26.1분기 중 제도개선사항 적용

- 금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각 보험사의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('26.1분기 中), 개정 즉시 적용 추진

< 향후 추진일정 >

구 분	필요 조치	적용시점
①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	각 보험사 요율서 반영	'26.1분기
② 시간제보험 가입대상 확대		
③ 이륜차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	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	

【제도 도입 예정사항 안내】 ↳ 「이륜차 할증등급 제도」 도입 추진

- 금융감독원은 ①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, 위험도에 적합한 보험료 부과를 통한 ②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안정화 등을 위하여,
-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多사고자에 대한 '할증등급 제도'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니, 안전 운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향후 이륜차 손해율 추이 및 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확정·공표할 예정이며, 제도 시행 시 최근 3년간의 사고경력을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할 예정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